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10.17008/skklr.2021.33.2.020
제33권 제2호 (2021. 6.)
Sungkyunkwan Law Review Vol.33. No.2 (June 2021) pp 689 - 729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

전 영 균*
김 현 경**

【목 차】

Ⅰ. 서론
Ⅱ.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 및 현황
1.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
2. 개정 전자서명법 주요내용
3. 소결
Ⅲ.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문제점
1. 공인인증을 대체한 실지명의 확인
2. 실지명의 확인기관의 높은 진입장벽
3. 전자서명인증의 분야별 파편화
4. 소결
Ⅳ. 전자서명인증제도 개선과제
1. 인정사업자의 실지명의 확인 권한 부여
2. 실명확인 방안 현실화
3. 전자서명인증 심사체계 일원화
Ⅴ. 결론

【국 문 요 약】

2020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래로 20년 넘게 '공인'의 자리를 지켜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이 확산되는 등 인증 시장 활성화가 예측된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제도가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에 맞춰 설계된 탓에 실지명의 확인, 분야별 인증제도의 파편화 등 여전히 신규 인증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사업자의 실지명의 확인 권한 부여 확대, 실명확인 방안 현실화, 전자서명인증 및 심사 체계 일원화 등 전자서명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인증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주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교신저자)

Ⅰ. 서론

1999년 전자서명법[1]이 제정된 이래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 쇼핑 등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재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폐지 여론에 부딪혔고 2020년 6월 전자서명법[2]이 개정되면서 20년 넘게 지켜왔던 독보적인 '공인'의 지위를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실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은 공인인증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 및 보안프로그램 등 관련 기술 및 서비스로 인한 불편함이 핵심이었다.[3] 근원적으로는 공인인증서에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어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4] 하지만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되는 길이 열리면서 인증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인인증기관과 본인확인기관에 맞춰 설계된 전자서명인증제도로 인해 실지명의 확인과 같이 신규 인증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제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시장 내 경쟁을 방해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서명인증의 확산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Ⅱ),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Ⅲ), 바람직한 전자서명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Ⅳ).

---

1) 전자서명법, 법률 제5792호, 1999.2.5. 제정, 1999.7.1. 시행

2) 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2020.6.9. 전부개정, 2020.12.10. 시행

3) 김현철, "개정 전자서명법의 쟁점과 국제적 흐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2), 2021, 91-92면.

4) 김현경, "전자거래에 있어서 서명·인증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2013.9), 2013, 156면; 김기창, "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 (2017.11), 2017, 1922면.

Ⅱ.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 및 현황

1.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

가.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 논의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은 전자서명법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논의가 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공인인증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바로 '천송이 코트' 사건이다.[5] 한류의 바람 속에서 드라마에 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을 공인인증서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사실 이 역시도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액티브X 설치 및 호환성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겹쳐 공인인증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고, 결국 폐지로 이어졌다.

다만, '천송이 코트' 건은 2014년 3월 20일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논쟁거리가 되었을 뿐, 이미 그 이전부터 공인인증서의 강제 적용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어왔다. 2013년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6]은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개념을 삭제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업무는 공공부문이 행정적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7]에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문제의 시초와는 별개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8], 공인인증서 폐지가 포함된 전자서명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9]

---

5) 한국경제, "[규제개혁 끝장토론] '천송이 코트' 해외판매 막은 액티브X", 2014.3.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4032024431" [최종확인 21.3.28]

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최재천안, 1905145), 2013.5.28. 발의

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안, 1905067), 2013.5.23. 발의

8) 서울경제, "문재인 "ActiveX' 퇴출 시키겠다" ICT 공약 발표", 2017.3.2., https://www.sedaily.com/NewsView/1OD7PV29L9 [최종확인 21.3.28]

나. 공인인증서의 장단점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전자서명에 필요한 '공인'된 인증 방식이 필요한지 여부이다.[10]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점은 보안문제, 제한적인 사용처로 인한 차별 문제, 갈라파고스 제도, 기술 혁신의 정체 등 다양하게 지적된 바 있으나, 공인인증서로 인해 국가정보화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도 존재한다.[11]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하나만으로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어 있어 공적 증명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었다.[12] 그리고 인증서 하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데도 역할을 하였다.

공인인증서는 신원확인 기능과 부인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뱅킹(2002년 9월)[13]과 사이버증권거래(2003년 3월)[14]에서 공인인증 의무화를 차례로 시행하며 실시간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다.[15] 더불어 공공부문에서도 전자정부포탈(현, 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병무청,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공인인증서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인인증서의 뛰어난 보안성 때문인데, 공개키 기반구조(PKI)[16]는 구글, 페이스북

---

9) 김현철, 앞의 논문(주3), 83면; 김현경, 앞의 논문(주4), 151면.

10) 김현경, 앞의 논문(주4), 152면.

11) 김현철, 앞의 논문(주3), 82면.

12) 장영환, "공인인증서 제도 현황과 이슈 -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6권 제3호 (2010.5), 2010, 26면.

13) 정보통신신문,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 의무화", 2002.8.31.,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2 [최종확인 21.4.10]

14) 한국경제, "인증서 발급 한때 중단..사용의무화 첫날", 2003.3.3.,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03030352371 [최종확인 21.4.10]

15) 김현철, 앞의 논문(주3), 91면

16) 공개키 기반구조(PKI)는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비밀키(secret key) 방식에서는 전자서명 후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못한다. (장경원, "전자서명의 공법적 제문제 - 독일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29호 (2011.4), 2011, 172면)

도 도입했을 정도로 초기 그 기술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17] 따라서 신원확인, 무결성 확인, 부인방지 기능 등을 보유한 공인인증서의 도입은 당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2009년 인구 대비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118.3%(2009년)으로 같은 시기 영국 35.0%(2008년), 미국 18.5%(2009년), 중국(2009년) 11.0%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터넷뱅킹 보급이 빠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18], 이러한 차이가 공인인증서의 초기 보급을 통한 효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장점과 공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며 더욱 부각된 단점과 폐해들은 이를 무색하게 하였다. 액티브X와 이와 관련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와 관련된 충돌 오류 및 느린 속도가 대표적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 이용 시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야 하고 설치 및 작동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보안만을 중시여기다 보니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야하고 1년에 1회 필수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19] 이 때문에 인터넷 환경에 친밀하지 못한 고령층 등은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도 존재했다.

공인인증서의 단점과 문제점은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와 서비스적인 개선미비에 기인한다.[20]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액티브X를 대체하거나 액티브X를 필수로 적용하더라도 즉각적인 피드백 반영으로 서비스를 개선했다면 지금의 공인인증서 폐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제도상 정부가 일부 공인인증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일종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고 있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사라지다보니 공인인증기관들은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었다.[21] 이 때문

17) 김영대, "[Zoom In] 굿바이 공인인증서, 웰컴 간편인증",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마이더스, 2018년 제3호 (2018.3), 2018, 114면.

18) 장영환, 앞의 논문(주12), 25면.

19) 오가영·김태영, "국내・외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한 연구 - 한국・미국・일본・EU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한국무역연구, 제3권 제2호 (2003.12), 2003, 183면.

20) 김현철, 앞의 논문(주3), 91면; 강태경·황상규,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12권 (2003.6), 2003, 7면.

에 보안성 등 도입 초기의 기술적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결국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단점들만 부각되면서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상황이 되었고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22]

다. 전자서명법 개정 과정

공인인증서에 대한 폐지 여론과 대통령의 공약을 기점으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에 대한 개정 법률은 19대 국회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23]과 이종걸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이 시초이다. 이들 법안은 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혹은 사용 강제 조항 삭제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 및 대안 폐기되면서 공인인증서는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고용진 의원이 제일 먼저 공인인증서 폐지를 포함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25]을 발의하였고, 이후 정부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6]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정부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27]을 발의하였다. 결국 전자서명법은 정부안 포함 총 7개 발의안[28]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29]으로 병합되었으며, 전자서명법 위원장 대안으로 2020년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9일 공포되고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다.[30]

---

21) 김기창, 앞의 논문(주4), 1919-1920

22) Acemoglu, D., Gancia, G., & Zilibotti, F., "Competing engines of growth: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147(2), 2012, p.336.

2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최재천안, 1905145), 2013.5.28. 발의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안, 1905067), 2013.5.23. 발의

2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안, 2012317), 2018.3.6. 발의

26)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180206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제2차 해커톤 개최 결과, 2018.2.6.,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52 [최종확인 21.3.27]

27)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 2015540), 2018.9.14. 발의

28) 전자서명법 7개 발의 법안 : 고용진안(2012317), 신용현안(2012933), 박성중안(2012350), 정부안(2015540), 박선숙안(2020764), 강병원안(2022413), 조훈현안(2022301)

2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 2024964), 2020.5.20. 발의, 2020.6.9. 공포

30) 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2020.6.9. 전부개정, 2020.12.10. 시행

2. 개정 전자서명법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

전자서명법 위원장 대안에서는 법률 개정이유를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으로 인한 기술 및 서비스 혁신 저해,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경쟁을 유발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법률의 개정 취지다. 독점 상황 타개와 경쟁을 통한 국민의 편익 보장을 최우선 과제라고 본 것이다.

나. 개정 전자서명법 주요내용

개정 전자서명법은 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②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 도입, ③ 전자서명 이용자 보호 조항, ④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부수적인 개정사항 등을 언급한 부칙으로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정의 조항에서는 공인인증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을 ‘인증서’ 혹은 ‘전자서명’으로 수정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전자서명’의 정의를 서명자의 신원이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전자서명 내 서명자의 '신원확인'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정의하였다(법 제2조).

더불어 개정 전자서명법에서는 인증서를 발급하여 전자서명업무를 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추가적으로 '인정사업자'[31]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차후 이는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여부에 따라 업무 범위를 차별화하여 이용기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확장 적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및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의 인정제를 언급하고 있으며(법 제7조~제13조), 운영기준은 별도 행정규칙(고시)으로 두고 있다.

인증서의 적격판단에 의한 계위를 두는 것은 EU전자서명지침에서도 보이고 있는 형태이다.[32] 지침에서는 1단계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과 2단계 고급전자서명(advanced electronic signature)으로 구분하고 있다.[33] 전자서명법에서의 인정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의 경우, 2단계 '고급전자서명'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U는 전자서명지침을 보완하여 2014년 전자인증규정(eIDAS)을 채택하고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는데[34], 전자서명지침의 2단계 구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격전자서명(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개념을 추가하여 총 3단계 계위로 재구성하고(eIDAS 제3조 10~12항), 기존 EU전자서명지침에서 영내 회원국 간 각각 다른 전자신원확인방법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35] eIDAS의 적격전자서명은 적격 인증서에 기

31)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말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9호, 2020. 12. 10., 전부개정)

32)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33) Reed C., "What is a Signature?", Th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JILT), 00-3, 2000, p.32.

34) eIDAS가 시행되면서 EU전자서명지침은 폐지(replaced)

35) Graux, H., "Moving toward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identification as a trust service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Technology, 8(2), 2013, pp.110-111; 김현수, "EU의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업무 규정에 관한 고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6.6), 2016, 463면; 정완용,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동

반을 둔 고급전자서명으로 (a) 서명자와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b)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c) 서명자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는 서명 생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되어야 하고, (d) 서명 대상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eIDAS 제26조).[36] 이는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인정사업자'의 인증서 개념이 eIDAS의 적격전자서명의 요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는 달리 몇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우선 '인정사업자'는 인증제 혹은 라벨링 제도와 같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법 제13조). 그리고 '인정사업자'는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37](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다만, '인정사업자'는 위와 같은 권리 이행을 위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검사 및 시정명령 그리고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받게 된다(법 제16조~20조).

부칙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 및 이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타법에서 인용하고 있던 기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문구를 개정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1), 2017, 690면.

36) Regulation (EU) No 910/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Internal Market and Repealing Directive 1999/93/EC

37)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인정사업자'이면서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전자서명인증 활용 현황

1)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이 개정(20.5.20)된 이후, 2020년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며 본격적으로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인증서가 공공웹사이트에 추가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38] 시범사업은 ‘인증공통기반[39]’에 민간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국세청), 정부24(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시범사업자 선정 후 1년간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는 전자서명법상 ‘인정사업자’가 이러한 역할을 대체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개 시범사업 후보사업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심사를 통해 2020년 12월 21일 5개 시범사업자(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PASS)를 최종 선정하였다.[40] 그리고 2021년 1월 시범사업이 개시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 그리고 국민신문고에서 공동인증서[41] 없이도 5개 시범사업자가 제공하는 간편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42] 2020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43]에서의 간편인증 이용량은 약 913만 건[44]으로 공동인증서의 7,106만 건에

---

38)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안내”, 2020. 9.16.,https://www.kisa.or.kr/notice/notice_View.jsp?mode=view&p_No=4&b_No=4&d_No=2670[최종확인 21.4.10]

39) 인증공통기반은 각 사이트별로 인증서를 등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5개 시범사업자의 인증서를 인증공통기반 형태로 구성하였다.

40)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최종 선정 결과 공지”, 2020.12.21., https://www.kisa.or.kr/notice/notice_View.jsp?mode=view&p_No=4&b_No=4&d_No=2724 [최종확인 21.4.10]

41)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로, 공인인증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다.

42)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2020.12.2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1761 [최종확인 21.4.10]

43) 2020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 오픈했다.

44) 간편인증 사업자별로 세부 건수는 카카오(586만 건, 7.2%), 이통3사 PASS(240만 건, 3%), KB국민은행(65만 건, 0.8%), 페이코(13만 건, 0.2%), 삼성 패스(9만 건, 0.1%). (머니투데이, “"익숙한 게 좋다?"…연말정산 간편인증 이용 12% 머물러”, 2021.2.24., https://news.mt.co.k

비하여 1/5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간편인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이 비중은 점차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민간분야 전자서명인증 시장

공공부문이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서명인증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증서가 출시되며 공인인증서 지위가 사라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 중 기존 공인인증기관이던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과 함께 민간인증서 시장 진출을 위하여 은행권과 함께 '금융인증서'라는 별도의 인증서를 만들었다. 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만들기는 했으나, 액티브X와 보안프로그램(플러그인)을 설치 후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문제를 해결해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하고 갱신기간도 3년으로 설정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금융인증서는 2020년 4월 기준 15개 시중은행과 4개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DB 손해보험 등 보험사로도 그 적용 기관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금융인증서 외에는 인터넷 기업들의 인증서가 그 세를 빠르게 불리고 있다. 우선 카카오는 2020년 12월 인증서, 신분증, 자격증 등을 카카오톡에 보관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3개월 만인 2021년 4월 기준 1,000만 인증서 이용자를 확보하는 등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인증서 시장의 확대를 이끌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2020년 3월 인증서를 출시한 이래 2021년 4월 기준 500만 명의 인증서 이용자를 확보하였으며, 우리은행과 스마트캠퍼스 사업 관련 MOU를 체결[45]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통3사(SKT, KT, LGU+)는 각각 제공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보안인증기업 ATON와 함께 개발한 PASS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통합 제공하고, 2019년 4월에는 PASS 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여 2020년 12

---

r/mtview.php?no=2021022409273067891&VNC_T [최종확인 21.4.11])

45) 머니투데이, "'가입자 500만' 네이버 인증서, 우리銀과 스마트캠퍼스 만든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910555987043, 2021.4.9. [최종확인 21.4.11]

월 기준 인증서 발급건수가 2,000만이 넘었다. PASS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는 3,000만 명 이상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기반으로 인증서 시장까지 빠르게 사업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과 관련한 시정권고를 받았는데[46], 이는 이통3사가 PASS앱을 통해서 인증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다.

3. 소결

공인인증서는 도입 초기 전자서명 및 인증을 통한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기술 및 서비스 문제, 또한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으로 결국 폐지되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의 개정 이유에서도 '산업경쟁력 증진 및 국민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국민의 편리함 제고'라고 함으로서 기존 공인인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법 개정 취지와 같이 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이 각자의 인증서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평가받은 '인정사업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47] 하지만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전자서명 확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정산(2020년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을 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이미 개정 전자서명법으로 인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인증제도는 이번에 개정된 전자서명법 뿐 아니라 본인확인기관 및 실지명의 확인 제도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및 금융실명법, 금융전자거래와 금융분야 인증서 요건을 다루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상호

---

46)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통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PASS앱) 관련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 보도자료, 2020.5.19.,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49482 [최종확인 2021.4.11.]

47) 2021년 4월 기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를 받고 있거나 준비 중이며,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 12월 이전 인정사업자 지위 획득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연계되어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제도상 하나의 법이 개정되거나 개선되더라도 이와 연계된 법령이 법 개정/개선 효과를 반감시키게 되어 신규 사업자가 산업에 진입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다양한 인증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48] 만약 제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 등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다면 혁신적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곤란하여 결국 전자서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우려도 존재한다.[49]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번 개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48)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2019.11), 2019, 149면.

49) 김현경, 앞의 논문(주3), 168면.

Ⅲ.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문제점

1. 공인인증을 대체한 실지명의 확인

가. 실지명의 확인 제도

1) 실지명의 확인 유관 법령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정보통신망)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을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본인확인기관은 지정제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상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제도나 별정우체국법상 별정우체국 지정제도와 같이 허가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50]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기관 관련 조항은 2011년 4월 1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과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가 추가되면서 도입되었으며, 2012년 2월 17일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다른 법률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조항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I-pin 3개사(NICE, SCI, KCB)와 2012년 이통 3사[51], 2018년 신용카드 7개사(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다.[52]

---

50) 이상윤,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2-06, 2012, 23-26면.

5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2012.12.28.,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4&ctx=ALL&searchKey=ALL&searchVal=%EB%B3%B8%EC%9D%B8%ED%99%95%EC%9D%B8%EA%B8%B0%EA%B4%80&boardSeq=35552 [최종확인 21.3.27]

실지명의 확인 제도는 1993년 당시 차명거래 및 비실명거래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이른바 긴급명령)이 내려지면서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시작되었고, 긴급명령은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법으로 자리 잡았다. '실지명의'의 정의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에서 실지명의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증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2) 전자서명법에서의 실지명의 확인

전자서명법 제14조(신원확인)에서는 '인정사업자'에게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인 '인정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인정사업자'의 신원확인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인 인정사업자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세부적으로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 포함)하여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증표 및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동령 시행규칙 제5조).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인정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52)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2018.4.30.,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2&ctx=ALL&searchKey=ALL&searchVal=%EB%B3%B8%EC%9D%B8%ED%99%95%EC%9D%B8%EA%B8%B0%EA%B4%80&boardSeq=45718 [최종확인 21.3.27]

인정을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나. 실지명의 확인의 중요성

개정 전자서명법 부칙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 및 이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타법에서 인용하고 있던 기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기본법 등 18개 법률[53]에서 '공인전자서명' 혹은 '공인인증서'의 문구를 제외할 때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54]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에서도 부칙에 타법 시행령 개정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55] 25개 시행령에서 실지명의를 포함한 전자서명 혹은 인증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실지명의를 포함하지 않는 전자서명 혹은 인증서로 문구를 변경하는 시행령도 10건이 존재).[56] 이처럼 '공인인증서'를

---

53) 18개 법률 : 국세기본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대체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정당법, 주민등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54) 부칙에서 언급된 타법 개정 대상 법률은 22개이나 실지명의를 확인 의무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18개 법률이다.

55) 부칙에서 언급된 타법 시행령 개정 대상은 37개 시행령이나, 이 중 실지명의 언급을 포함한 전자서명 혹은 인증서로 문구를 변경하는 타법 시행령은 25개이며, 실지명의 언급이 포함되지 않고 전자서명 및 인증서로 대체하는 타법 시행령 변경 건도 10건이 있다. 특이점으로 상법 시행령은 '공인인증기관'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변경하는 문구가 존재한다.

56) 실지명의를 포함한 변경 건 25개 시행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대체하는 인증서의 조건이 '실지명의를 확인한 인증서'로 규정되면서, 사실상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은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 전자서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의 여부에 따라 그 업무 범위를 달리하고 있어,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 아닐 경우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업자로 구분되어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는 전자서명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전자서명법 시행령」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57]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58] 관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에서 "실지명의 기반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제공을 못해 차별을 받는다는 일부 사업자 의견이 있었으나, 전자서명을 이용함에 있어 실지명의의 확인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실지명의 확인 방법을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자서명 이용기관에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59]함에 따라 연계정보 처리 근거(시행령 제12조) 마련"이라고 언급하며, 본인확인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용기관에서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60]

법률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실지명의를 포함하지 않는 변경 건 10개 시행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57)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5. 법제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8.28.,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047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최종확인 21.4.11]

58)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전저사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은 입법예고(안) 당시 제10조에 해당하였으나, 최종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제9조로 변경되었다.

59) 전자서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는 이용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전자정부를 예시로 들며, "전자정부 등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수단과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연계정보 및 전자정부가 보유한 주민번호 연계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0)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5. 법제처, "전자서명법 시행령

그러나 이용기관이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연령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기관(온라인 콘텐츠 사업자,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 게임사업자 등)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의 인증서로는 연령확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연령확인을 하는 방법은 인증서 외에도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기존 공인인증기관, 이통3사 등) 역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신원확인이 불가한 인증서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적용하여 별도의 본인인증방식을 추가 도입하기보다는 인증서 하나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인증서를 선택할만한 유인을 갖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실지명의(실명) 확인이 대체한 형국이다. 이는 많은 법령들에서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을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 혹은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즉 전자서명법상 실지명의 확인에 대한 권한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받은 ‘인정사업자’ 모두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확보한 사업자에게만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위가 없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은 본인확인기관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비하여 전자서명 업무 범위가 현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이용기관이 해당 인증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어 전자서명인증시장에서의 인정사업자 간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전자서명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상황 및 균형을 붕괴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8.28.,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047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최종확인 21.4.11]

2. 실지명의 확인기관의 높은 진입장벽

가. 인터넷 사업자의 본인확인기관 신청 배경 및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카카오,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61] 인터넷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62] 인터넷3사는 앞서 2020년 9월 22일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결과 발표 기한을 연장하다 2021년 3월 9일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63]

인터넷3사가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한 이유는 본인확인기관이 비대면 인증의 첫 관문이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도 실지명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사업 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내 본인확인기관이 총 19개 사업자가 존재하나 이통3사가 본인확인시장의 9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64], 이통3사가 PASS를 내세워 무조건 PASS앱을 거치는 표준창방식[65]을 강제하고, PASS앱 인증이 아닌 문자인증 가격을 34원에서 40원으로 인상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발휘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66] 따라서 인터넷3사의 본인확인기관 신

---

61)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TOSS)를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62)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제8차 위원회 결과”, 2021.3.9,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2&boardSeq=50798 [최종확인 21.3.26)

63) 시사저널e,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 다음달 발표”, 2021.2.22,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35 [최종확인 21.4.11]

64) 조선비즈, ““코로나로 필요성 커지는데”… 해 넘기는 본인확인기관 심사“, 2020.12.2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1840.html [최종확인 21.4.11]

65) 이통3사가 제공하는 문자 본인확인 방식은 소켓방식과 표준창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켓방식은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을 이용기관(기업)의 서비스에 맞게 알아서 구현하는 방식이고, 표준창 방식은 이통3사가 제공하는 PASS앱 및 웹페이지를 띄워주는 방식이다. 표준창방식이 적용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간단히 받은 문자를 입력하면 되는 동선을 PASS앱을 설치하거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66) 홍정민 의원은 2020년대 국정감사(2020.10.23.)에서 이동이통3사가 표준창방식을 강제하는 등 본인인증 앱 기반 사설인증서인 ‘패스(PASS)인증서’에 대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국회사무처, 2020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20.10.23.,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 [최종확인 21.4.11])

청 목적은 인증시장에서의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보유한 이통3사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나. 카카오와 네이버의 심사 결과 분석

이번 심사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받은 부적한 판단 사유는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부문이다.[67]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네이버의 경우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카카오와 네이버는 "초기계정 가입은 비실명으로 이루어지나 이후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인증 및 계좌점유인증 이후 실명전환되므로 유일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초 비실명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여전히 검증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계정탈취 및 명의도용 등이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다시 말해,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계정을 가입할 때 비실명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 이후 해당 계정에 본인확인을 한다고 해도, 최초 계정을 만든 소유자와 본인확인을 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68]

그러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비실명 계정에 본인확인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통위 답변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우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비실명 계정에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등)과 계좌점유인증으로 이뤄지는 2-factor 인증을 거친 후 해당 계정을 '본인확인정보용 계정'으로 만드는 일종의 '가입' 과정까지 거쳐 본인확인정보를 발급한다.[69] 결국 '가입' 시점에서는 기존 본인확인기관과 동등한 환경인

---

67)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역시 이번 심사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았으나, 카카오와 네이버가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부문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것과는 달리 '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설비' 부문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2면)

68) 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2면, 2021.3.9., https://kcc.go.kr/user.do;jsessionid=2Z46eiP5hWRhB0J7R9glCkPPjOOjblNrTJUiIwtZ.servlet-aihgcldhome10?mode=view&page=A02010100&dc=K02010100&boardId=1003&cp=1&boardSeq=50793 [최종확인 21.4.11]

셈이다. 또한 비실명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탈취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는 우려 역시, '가입'시점에 신분증을 도난당하거나 휴대폰을 도난당할 경우 이미 지정받은 본인확인기관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만의 부적격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불어 본인확인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고 지정되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불합격 사유가 된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부문은 해당 고시의 [별표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다.[70] 해당 기준에 따르면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1인당 본인확인정보가 1개만 발급되도록 하는 유일성에 대한 검사 기능"이다.[71]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떤 방식으로 본인확인정보 발급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카카오와 네이버가 비실명 계정에서 '가입' 과정을 거쳐 '본인확인정보용 계정'에 본인확인정보를 발급하고, 동일한 명의자가 중복으로 본인확인정보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갖추었다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부문에 대한 심사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문제와 이로 인한 계정탈취 및 명의도용을 우려하여 부적합 판단을 내렸지만 이 결정은 '본인확인기관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부문에 대한 부적합 판단이라기보다는 신분증의 대면확인(대면확인에 준하는 비대면 방식 포함)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존의 본인확인기관과는 다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성 부족에 기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69) 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2면, 2021.3.9., https://kcc.go.kr/user.do;jsessionid=2Z46eiP5hWRhB0J7R9glCkPPjOOjblNrTJUiIwtZ.servlet-aihgcldhome10?mode=view&page=A02010100&dc=K02010100&boardId=1003&cp=1&boardSeq=50793 [최종확인 21.4.11]

70) I.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7. 대체수단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 7-1. 본인확인정보의 발급 > 나.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 (1) 1인당 본인확인정보가 1개만 발급되도록 하는 유일성에 대한 검사 기능

71)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2015. 7. 31 일부개정

다.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의 함의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통3사는 본인확인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과 맞물려 인증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보다 한 발 앞설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3사는 이번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소식을 접한 이후 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72],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거나 신분증을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는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점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기존의 본인확인기관의 독점적 지위가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도 전이되어 인증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 외에는 본인확인기관을 획득할 수 없다면, 개정 전자서명법의 입법취지대로 인증시장 경쟁을 통한 다양한 인증수단의 제공,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전자서명인증의 분야별 파편화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서명 및 인증서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거래라고 말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을 위해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야 하는데, 이를 접근하기 위한 열쇠가 '접근매체'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지시라는 접근매체에 대한 본래의 목적 외에도 본인확인(이용자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 거래의 완전성(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이라는

72) 한국경제, "본인확인기관 탈락에 '당혹'…네이버·카카오 "재심사 요청"", 2021.3.10.,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3109415g [최종확인 21.4.11]

목적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전자서명법상 신원확인(전자서명법 제14조)과 전자서명의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을 포함한 개념으로써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73]

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안) 발의

2020년 11월 27일 국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7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발의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개정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규제 합리화,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 및 빅테크 규제 강화, 비대면 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 정비 등이며, 이 중 전자서명인증과 관련한 '비대면 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에서는 인증수단에 대한 제도적 변경과 실지명의 확인 방안에 대한 개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에서는 현행 접근매체를 '조회용', '지시용', '복합용'으로 구분하고(안 제2조제10호), 조회용 매체를 기존 접근매체의 본인확인 용도로 정의하였으며(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지시용 매체를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거래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명시하였다(안 제2조제10호의3 신설). 또한 지시용매체가 될 수 있는 인증서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지시용매체로서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엔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요건에 대해 전담기관의 심사를 받게 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46조의2 신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업무지침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비대면 거래 시 2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접근매체 사용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안 제6조의3

73)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8권 (2014.10), 2014, 14-15면.

7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안, 2105855), 2020.11.27. 발의

신설).

다. 금융분야 인증서의 개별 심사체계 구축 가능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지시용' 매체에 대한 요건이다. 제6조의2(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 요건 등) 제2항에서는 "지시용매체로서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하는 인증서에 대하여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인증 제도와는 별개로 별도의 인증서 심사체계를 갖추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 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전담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세부적인 방법을 고시로 한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금융분야에 대한 인증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가 같은 개념이고[75] 전자서명법 개정 전 금융분야 역시 공인인증서로 전자금융거래를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자리를 개정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서명인증 제도를 배척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공인인증서가 여러 문제점(전자서명 기술발전과 서비스 혁신 장애로 인한 국민의 선택권 저해)으로 인해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을 통해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전자금융매체를 위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는 것은 전자서명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인증서에 대하여 금

75)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2014.5), 2014, 795-796면.

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사기관 및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76]

그러나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이미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 업무평가 인정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분야에만 별도의 인증체계를 갖추는 것은 금융 산업에 장벽을 치는 일이다. 이로 인해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였던 산업 경쟁력 확보가 저해될 뿐 아니라 (구)공인인증서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해 이용자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정 취지인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완결"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라. 인증 심사체계의 분야별 파편화 가능성

금융분야의 별도의 인증 심사체계 구축은 향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다른 분야에서도 각각 별도의 인증 심사체계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의 영역별 파편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분야가 별도의 인증 심사체계를 가질 경우, 금융정보만큼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 및 보건 분야 역시 정보의 민감성 및 국민의 정보 보호를 내세워 별도의 인증 심사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통신 및 교통 분야 등 여러 분야의 개별 인증체계 보유를 유발하여 결국은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사업에 '통합인증'을 도입하면서 인증수단으로 유일하게 공동인증서만을 허용한 바 있으나,[77] 공인인증서 제도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이어지자 사설인증서도 허용하기로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78] 이는 단순히 금

76) 대한민국국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5호)", 2021.2, 156-158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Y0P1Y1P2W7K1W7I5D8X0O7Q2R3T3 [최종확인 21.4.11]

77) 전자신문, "[단독]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때아닌 '공인인증서 강제' 논란", 2021.4.12., https://www.etnews.com/20210412000128 [최종확인 21.5.1]

융분야에서 개정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신뢰하지 못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영역별 전자서명인증 파편화가 실제로 발생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전자서명인증의 파편화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년 12월에 시행된 지 4개월이 흘렀음에도 '인정사업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심사에 사업자들이 투입하는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각 분야별로 별도의 인증 심사체계가 존재할 경우 인증사업자들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결국 이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들이 인증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리함을 증진하기 보다는 심사획득 및 유지에 더욱 집중하여 전자서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4. 소결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전자서명인증제도 관련 유관법령들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지명의 확인 제도와 같은 전자서명인증제도의 한계로 인해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지위가 없는 사업자 간 전자서명 업무 범위가 현격히 차이가 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자서명 이용기관들이 인증서를 선택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어 전자서명인증 시장에서의 중요 경쟁력 차이로 부각될 수 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인증서로 많은 이용기관을 포괄할 수 있는 인증서를 선호하고 이용기관들도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인증서를 본인들의 전자서명 방식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증서들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상황에서 경쟁상황 및 균형을 붕괴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앞서 인터넷3사와 같이 신규 사업자들이 실지명의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

78) 전자신문, "[단독]"마이데이터 사설인증서 허용"...정부 부처 '협의체' 만든다", 2021.5.16., https://www.etnews.com/20210514000134 [최종확인 21.5.17]

한 기존사업자와의 격차가 영구적으로 유지될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안)과 같이 금융 등 특정 분야에서의 별도의 인증 심사체계 구축과 같은 움직임 역시 시장 내 경쟁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시장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이 인증심사를 분야별로 준비하거나 여러 소관 부처로부터 중복적으로 규제를 받는 등 사업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 내 경쟁환경 붕괴 및 사업자의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편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도 존재한다.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다양한 민간인증서들이 경쟁하면서 산업경쟁력 확보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초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전자서명인증제도 개선과제

1. 인정사업자의 실지명의 확인 권한 부여

전자서명법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사업자'(인정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법 제14조(신원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실지명의 확인 방법을 확대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는 신원확인 방법을 언급하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본인확인기관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구분하여 신원확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정사업자 모두가 실지명의 기반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업자가 증가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79]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지명의의 확인 여부에 따라 전자서명 업무 범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80]

따라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신원확인하는 방법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하단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연계정보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지명의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등의 연계정보[81] 등 비대면 방식의 본인확인도 실명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79)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5면 (법제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8.28.,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047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최종확인 21.4.11])

80) 전응준,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2017.12), 2017, 302면.

81)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단방향 암호화를 한 88비트 문자열이다. 단방향 암호화가 하였기 때문에 복호화를 한다고 해서 암호화를 했던 원 정보(주빈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

이러한 방안이 적용될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인정사업자'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도 가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며, '실지명의를 확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본인확인기관이 아니더라도 전자서명 업무 범위에 차별이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연계정보가 사실상의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며 연계정보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82]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일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안에 생년월일, 출생지(지역고유번호), 성별 등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83] 반면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감정보 포함 문제를 해결하고,[84] 멤버십포인트 등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85] 미국에서도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유일성이 보장되는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금융기관 거래, 공공기관 지원 신청, 여권신청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연계정보의 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취지 내에서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기 위한 대안이며,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이용자체를 금지하나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방식의 본인확인도 실명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외에도,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으로써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전자서명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법령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

82) 진보넷, "[연계정보(CI) 정책]에 대한 의견서", 2019.10.13., https://act.jinbo.net/wp/41604/ [최종확인 21.5.6]

83) 양정훈·이희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는 Duplicated Information 과 Connecting Information 방법론",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1권 제1호 (2014.4), 2014, 375면.

84) 이형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및 관리체계",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8권 제6호, 2010, 57면.

85) 양정훈·이희조, 앞의 논문(주83), 378면.

2. 실명확인 방안 현실화

가. 실지명의 인정 범위 확대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라고 정의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실지명의를 세부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라고 정의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하지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지명의는 실물이 있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등으로 대면으로 해당 실물을 확인해야 실지명의로 인정받는 상황이다. 동 시행령 조항은 1997년 12월 31일 법령 시행 이래 4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조항의 변경은 없었고 그나마도 마지막 개정이 2008년 2월 29일로 10년 넘게 개정이 없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술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안)[86]에서도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 특례 조항이 신설안으로 포함될 정도로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 수단을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실지명의의 인정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지명의의 인정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의해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성명, 대체수단 및 전자서명법 제14조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대체수단(연계정보 등)을 실지명의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온라인 및 비대면 환경에서의 실지명의 확인 빈도가 높아진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8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안, 2105855), 2020.11.27. 발의

나.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의 현행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87] 해당 고시는 2015년 개정된 것으로 제16조(규제의 재검토)에 의하여 3년마다 재검토 조치를 되어야하나, 2018년 별도의 개선 및 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정보통신망법은 물론 유관 법령들이 개정되어 최신 법령들과의 준거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대두되고, 최근 비대면 거래 등의 확산으로 온라인 전자거래 및 다양한 활동 등에서 본인확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의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88]

2020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역시 이 심사기준에 따른 부적합 판정 때문인데, 전술한대로 이들 인터넷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적합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탈락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신청 여부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지정 기준을 현행화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의 현행화를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기관들이 지정 기준에 맞춰 사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정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예측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정 기준에 최근 현실에 맞는 비대면 방식에 대한 고려와 최신 보안 기술 및 인증 방식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심사 규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정 기준의 검토를 통해 작년 심사에서 탈락한 인터넷3사를 비롯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보안기술과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야 본인확인기관 독점화에 따른 부작용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87)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2015. 7. 31 일부 개정

88) 김종배,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기관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6권 제3호, 2020, 17-18면.

3. 전자서명인증 심사체계 일원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 심사체계 등 전자서명인증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분야별로 별도의 인증 심사체계가 만들어질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은 중복적으로 심사준비를 해야 하고 다수의 소관부처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여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자서명인증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안) 제6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전담기관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전자서명법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를 인용하여 전자서명인증 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이미 전자서명법 개정 이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가 잘 이루어져 왔고,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인정평가 제도가 도입된 부분을 고려하면 그 안정적 시행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또한 인정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는 (구)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분야에서도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실제 다양한 민간인증서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공인인증기관과 본인확인기관에 맞춰 설계된 전자서명인증제도에는 아직 대면 중심의 실지명의 확인이 필수요소로 포함되는 등 신규 인증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분야별 특징을 이유로 인증서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인증체계의 분절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자서명인증제도의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전자서명법 내 신원확인 조항을 개선하여 인정사업자에 실지명의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실명법의 실지명의 조항 개선을 통해 실지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의 현행화를 통해 실명확인 방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서명 인증 심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의 체계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부여로 인한 산업 내 유효 경쟁의 상실 그리고 이로 인한 서비스 개선의 미비 등으로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실질화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2021.5.21., 심사개시일: 2021.6.8., 게재확정일: 2021.6.22.)

전영균 · 김현경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인증, 실지명의, 공정경쟁

【참 고 문 헌】

Ⅰ. 국내 논문

강태경·황상규,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12권 (2003.6), 2003.

김기창, "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 (2017.11), 2017.

김영대, "[Zoom In] 굿바이 공인인증서, 웰컴 간편인증",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마이더스, 2018년 제3호 (2018.3), 2018.

김종배,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기관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6권 제3호, 2020.

김현경, "전자거래에 있어서 서명·인증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2013.9), 2013.

김현수, "EU의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업무 규정에 관한 고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6.6), 2016.

김현철, "개정 전자서명법의 쟁점과 국제적 흐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2), 2021.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8권 (2014.10), 2014.

_____,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2014.5), 2014.

양정훈·이희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는 Duplicated Information과 Connecting Information 방법론",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2014.4), 2014.

오가영·김태영, "국내・외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한 연구 - 한국・미국・일본・EU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한국무역연구, 제3권 제2호 (2003.12), 2003.

이상윤,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2-06, 2012.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2019.11), 2019.

이형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및 관리체계",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8권 제6호, 2010.

장경원, "전자서명의 공법적 제문제 - 독일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29호 (2011.4), 2011.

장영환, "공인인증서 제도 현황과 이슈 -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6권 제3호 (2010.5), 2010.

전응준,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2017.12), 2017.

정완용,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1), 2017.

Ⅱ. 국외 논문

Acemoglu, D., Gancia, G., & Zilibotti, F., "Competing engines of growth: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147(2), 2012.

Graux, H., "Moving toward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identification as a trust service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Technology, 8(2), 2013.

Paul D.,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1985.

Reed C., "What is a Signature?", Th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JILT), 00-3, 2000.

Ⅲ. 국내외 법령 및 규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2015. 7. 31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안, 2105855), 2020.11.27.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안, 1905067), 2013.5.23. 발의
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2020.6.6. 전부개정, 2020.12.10. 시행
전자서명법, 법률 제5792호, 1999.2.5. 제정, 1999.7.1. 시행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강병원안, 2022413), 2019.9.10. 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안, 2022301), 2019.9.2. 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안, 2020764), 2019.5.31. 발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 2015540), 2018.9.14. 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안, 2012933), 2018.4.6. 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안, 2012350), 2018.3.7. 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안, 2012317), 2018.3.6. 발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최재천안, 1905145), 2013.5.28. 발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9호, 2020. 12. 10., 전부개정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Regulation (EU) No 910/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Internal Market and Repealing Directive 1999/93/EC

Ⅳ. 언론 기사 및 웹페이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180206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제2차 해커톤 개최 결과, 2018.2.6.,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52 [최종확인 21.3.27]

대한민국국회, “2020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10.23.,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 [최종확인 21.4.11]

대한민국국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5호)”, 2021.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Y0P1Y1P2W7K1W7I5D8X0O7Q2R3T3 [최종확인 21.4.11]

머니투데이, “'가입자 500만' 네이버 인증서, 우리銀과 스마트캠퍼스 만든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910555987043, 2021.4.9. [최종확인 21.4.11]

머니투데이, “"익숙한 게 좋다?"…연말정산 간편인증 이용 12% 머물러”, 2021.2.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409273067891&VNC_T [최종확인 21.4.11]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제8차 위원회 결과”, 2021.3.9,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2&boardSeq=50798 [최종확인 21.3.26]

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2021.3.9., https://kcc.go.kr/user.do;jsessionid=2Z46eiP5hWRhB0J7R9glCkPPjOOjblNrTJUiIwtZ.servlet-aihgcldhome10?mode=view&page=A02010100&dc=K02010100&boardId=1003&cp=1&boardSeq=50793 [최종확인 21.4.1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통신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PASS앱) 관련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 보도자료, 2020.5.19.,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49482 [최종확인 2021.4.11.]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2018.4.30.,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2&ctx=ALL&searchKey=ALL&searchVal=%EB%B3%B8%EC%9D%B8%ED%99%95%EC%9D%B8%EA%B8%B0%EA%B4%80&boardSeq=45718 [최종확인 21.3.27]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2012.12.28.,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4&ctx=ALL&searchKey=ALL&searchVal=%EB%B3%B8%EC%9D%B8%ED%99%95%EC%9D%B8%EA%B8%B0%EA%B4%80&boardSeq=35552 [최종확인 21.3.27]

법제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8.28.,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047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최종확인 21.4.11]

서울경제, “문재인 "'ActiveX' 퇴출 시키겠다" ICT 공약 발표”, 2017.3.2., https://www.sedaily.com/NewsView/1OD7PV29L9 [최종확인 21.3.28]

시사저널e,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 다음달 발표”, 2021.2.22,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35 [최종확인 21.4.11]

전자신문, “[단독]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때아닌 ‘공인인증서 강제’ 논란, 2021.4.12., https://www.etnews.com/20210412000128 [최종확인 21.5.1]

전자신문, “[단독]”마이데이터 사설인증서 허용“...정부 부처 ‘협의체’ 만든다”, 2021.5.16., https://www.etnews.com/20210514000134 [최종확인 21.5.17]

조선비즈, ““코로나로 필요성 커지는데”… 해 넘기는 본인확인기관 심사“, 2020.12.2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1840.html [최종확인 21.4.11]

진보넷, “[연계정보(CI) 정책]에 대한 의견서”, 2019.10.13., https://act.

jinbo.net/wp/41604/ [최종확인 21.5.6]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최종 선정 결과 공지”, 2020.12.21., https://www.kisa.or.kr/notice/notice_View.jsp?mode=view&p_No=4&b_No=4&d_No=2724 [최종확인 21.4.10]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안내”, 2020.9.16., https://www.kisa.or.kr/notice/notice_View.jsp?mode=view&p_No=4&b_No=4&d_No=2670 [최종확인 21.4.10]

한국경제, “본인확인기관 탈락에 '당혹'…네이버·카카오 "재심사 요청"”, 2021.3.10.,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3109415g [최종확인 21.4.11]

한국경제, “[규제개혁 끝장토론] '천송이 코트' 해외판매 막은 액티브X”, 2014.3.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4032024431” [최종확인 21.3.28]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2020.12.2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1761 [최종확인 21.4.10]

Abstract

The Limit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vised Digital Signature Act

Jeon, Young-gyun
Kim Hyun Kyung

With the revision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n 2020, the authorized certificate system which has been kept its place as "public official"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n 1999 was abolished. The revision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certification market by the widespread of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ertification methods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Despite the revision of the Act, however, there still exist barriers such as identification of actual name, fragmentation in sectoral certificate system, etc. which prevent new business operators from entering the market because the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ystem i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accredited certification body and the identification body.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system by expanding the authorization of qualified certification operator to identify the actual name, updating the policy on actual name verification, and unifying th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and examination systems. This will create the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for certificate business operators in market and eventually will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vised Act which is to improv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guarantee the people's right of choice.

Jeon, Young-gyun · Kim Hyun Kyung

Digital Signature Act, Authorized Certificat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ion, Actual Name, Fair Competition